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2. 1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1.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6.1.21.

다. 상정일자 : 제201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(2016.2.1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청소행정과장 김 정 일

가. 제안이유

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기금존속기한 연장 및 부칙에 나와 있는 존속기한을 조례안에 명시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명시(안 제2조의2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1일까지로 명시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1일까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